

▶시정권고 기능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고, 시정권고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후검열이 될 수 있다.

## 6.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언론중재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언론중재제도는 일반국민들과 언론인들로부터 필요성과 중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5%를 넘게 나타났다. (언론중재위, 2004)

<표 1>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단위: %)

	신청인	피신청인
필요하다	95.4	97.8
필요없다	4.6	2.2
무응답	-	0
총계	100.0	100.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한국언론재단이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들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2004년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비율이 일반시민은 92%, 언론인은 97%에 달했다. (주동황외, 2004),

언론중재 이용자들은 중재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피신청인인 언론인들이 신청인보다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표 2>언론중재위원의 중재 중립성 (단위: %)

	신청인	피신청인
매우 편파적	7.8	6.7
편파적	14.4	13.3
보통	31.1	22.2
중립적	18.9	40.0
매우 중립적	27.8	17.8
무응답	-	-
총계	100.0	100.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중재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신청인보다 피신청인인 언론인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중재신청이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는 신청인이거나 피신청인 모두 만족도가 높았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졌다.

**<표 3> 중재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척도는 5점 만점)**

	신청인	피신청인
합의	3.14	3.20
불성립	1.50	3.19
취하	2.81	3.80
기각	1.67	4.25
각하	2.67	4.4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일반인과 언론인들 간의 견해차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권중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높은 찬성비율을 보인 반면, 언론인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다.

**<표5> 손해배상 청구권 중재권한에 대한 의견 (단위: %)**

	일반시민	언론인
바람직하다	56.5	17.7
시기상조다	23.0	19.7
불필요하다	12.0	44.9
비현실적 발상이다	8.5	17.7

출처: 주동황 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4년.

<표6> 직권중재제도의 효력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일반시민	언론인
현상태가 적당하다	47.5	76.5
직권중재권을 강화해야한다	52.5	23.0
기타	-	0.5

출처: 주동황 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4년.

한편 신청인들의 70% 이상이 향후 다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소송제기 외에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중재제도는 국민들이 언론피해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언론피해에 대한 향후 대응 (단위: %)

대응방법	신청인
중재위에 반론보도청구	71.8
법원에 소송제기	14.5
해당매체에 적극항의	7.3
다른 상담기관 이용	1.8
대응하지 않겠다	1.8
기타	2.7
무응답	-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 7. 마치며

새로이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과거 정간법과 방송법에 담겨있던 언론중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해 언론중재제도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했고, 혼란스러웠던 용어를 정비하고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손해배상을 중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중재제도의 중재권한을 강화시켰다.